

【 10 】 양주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7. 05.

제 출 자 : 양 주 시 장

□ 제안이유

- 양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실생활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 의료, 재난, 교육등의 사회문제가 대두되어
- 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관심과 배려를 통해 현재까지 혜택을 받지 못한 외국인에게 우리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

□ 주요골자

- 가. 양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의 용어의 정의, 거주 외국인의 지위, 거주외국인 시책 추진을 위한 양주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 (안 제2조 내지 제4조)
- 나. 거주외국인의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 거주외국인,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다.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를 규정함 (안 제6조)
 -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문화,체육행사 등
- 라. 외국인 지원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내지 안 제12조)
 - 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 (임기 2년)
 - 위원회 기능
 - 거주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다문화 존중의 지역 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사항
 -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회의 개최, 간사의 사무처리의 범위

규정

-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범위내의 수당 지급
- 마. 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 13조)
- 바.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지원단체에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14조)
- 사. 매년 5월20일을 “양주시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안제15조)
- 아. 거주외국인 지원활동 유공자, 법인, 단체에 대한 포상 및 외국인에 대한 표창, 명예시민증서 수여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16조 내지 안 제18조)

양주시 조례 제 호

양주시 거주외국인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시에 91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 가정”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의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외국인 지원사업을 실시 하고자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인원파악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 외국인
 2. 외국인 가정
 3.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1. 재해, 질병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불법 체류를 해소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제6조(지원의 범위) ①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 응급 구호 및 의료지원
 4. 문화·체육행사 개최
 5. 기타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②시장은 전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2장 자문위원회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시장은 제4조에 의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양주시외국인지원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교육청·경찰서·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적정직위에 있는 자
2. 위촉위원 :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 ①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②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고,

간사는 거주외국인 지원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 1.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 2.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 3.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 4.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인 지원 활성화

제13조(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5조(세계인의 날) ①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양주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양주시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서 수여, 유공자·유공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 ③시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 지원단체에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시장은 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외국인에 대한 표창)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1. 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 ②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 ③그 밖의 외국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양주시 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명예시민) ①시장은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하고,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②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서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